

- 2026 K-의료기기 국내·외 학회 - 개별 참가지원 참여기업 모집

충청북도와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서는 도내 의료기기 관련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및 판로개척 지원을 위하여 『2026년 K-의료기기 국내·외 학회 개별 참가지원』 참가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참가를 희망하는 도내 기업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.

2026. 3. 20.

(재)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

1 사업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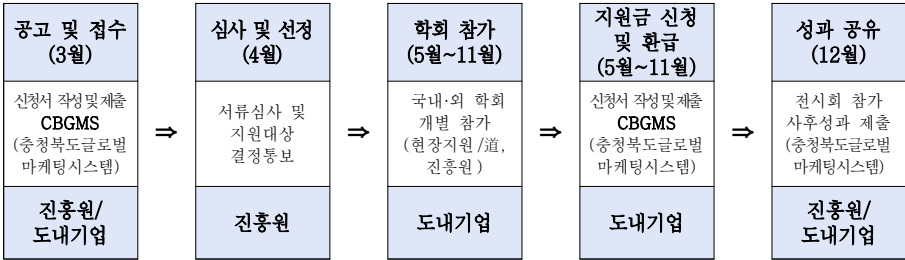
□ 전시회 개요

- 전시회명 : 2026년 K-의료기기 국내·외 학회 개별 참가지원
- 지원규모 : **도내 의료기기 관련 6업체 (업체당 700만원 한도) ※자부담 20%**
 - 2026년 국내 또는 해외에서 개최하는 의료기기 관련 학회에 개별적으로 직접 단독부스로 참가하는 도내 의료기기 업체
- 지원내용 : 의료기기 관련 학회의 참가비(부스비) 및 장치비의 80%
- 지원방법 : 의료기기 업체별 희망 학회 참가 및 참가비용을 선정된 기업에서 선지급 후 진흥원에 환급 신청

□ 신청자격

- 공고일 기준, 부가가치세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충북지역에 사업장(본사, 공장, 연구소)을 보유한 의료기기 관련 기업
(※ 자격요건은 사업자등록증(사본) 또는 공장등록증에 따름)
 - 2026년 싱가포르 의료기기 전시회 등 참가기업은 신청(충북) 불가

2 추진절차



3 평가 및 선정

- **선정방법** : 1차 서류적격 확인 → 2차 평가위원회 심사
- 평가위원회 심사를 통해 종합점수 고득점 순으로 참가기업 선정
- **선정기준**

기 업 경쟁력 (70)	- 참가제품 해외 마케팅 활동계획 적합성 - 최근 2년간 평균 수출액 - 해외규격인증 보유 - 외국어카탈로그/홈페이지/동영상 보유 - 특허권/상표권/디자인권 보유 - 지원을 통한 목표 및 기대효과	정책 우대 (30)	- 도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- 품질경영우수기업/노인일자리창출인증 기업/고용우수기업/사회적경제기업/여 성기업/장애인기업/메인비즈/이노비즈/ 벤처기업/창업기업/가족친화인증기업/ 일자리 으뜸기업/수출잠재기업 - 최근 2년간 충북무역의날 수상 경력 - 최근 2년간 동일사업 참여 이력
--------------------	--	------------------	---

※ 향후 평가지표는 변동이 있을 수 있음

4 신청기간 및 방법

- **신청기간** : 2026. 3. 20.(금) ~ 5. 8.(금)
- **신청방법**
- 충청북도글로벌마케팅시스템(cbgms.chungbuk.go.kr) 회원가입 후
온라인 신청(신청서류 제출)만 가능

- 진흥원 홈페이지(www.cba.ne.kr) 공지사항 사업신청 안내
- 문의처 : (재)충청북도기업진흥원 심우석 팀장(043-230-9741)
- 제출서류

필수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지원신청서(참가계획서, 개인정보 이용동의서, 설문지 포함) 1부 ※붙임서식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공장등록증 사본 1부 ③ 신청기업의 참가제품 카탈로그 및 제품설명서 사본 ④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1부
보유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최근 2년간 수출실적 증명서 사본 ② 해외규격인증/해외지식재산권 사본(※공고일 기준 유효한 서류) (해외인증서/특허/상표권/디자인권) ③ 외국어 카탈로그, 홈페이지, 동영상 입증할 자료 사본 ④ 품질경영/노인일자리창출/고용우수/사회적경제/여성기업/장애인기업 ⑤ 메인비즈/이노비즈/벤처기업/창업기업/가족친화/일자리옴/수출잠재

5 유의사항

- **평가표 근거 증빙자료 CBGMS 미등록 시 평가 배점에서 제외**
- 선정 규모 대비 접수 규모가 미달일 경우 재공고 시행
- 지원사업 선정기업은 부스 내 그래픽장치(현수막, 그래픽 등)를 설치하여야 함
- 선정 알림 이후 포기 시 향후 동사업 지원 시 패널티 부여(사업제한)
- 참가기업은 향후 3년간 수출실적 조사에 협조해야 함

6 기타사항

- 지원제외
 - 동일 학회에 타 지자체 또는 정부 기관(KOTRA, 테크노파크, 무역협회 등)의 지원사업에 **확정되었거나 예정되어 있는 경우**
 -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

-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(보고서 제출, 기술료 / 정산금 / 환수금 납부 등)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
-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또는 기업이 법정관리에 있는 경우
- 부도 또는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-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-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)
- 최근년도 기준 완전자본잠식, 감사의견이 “의견거절” 또는 “부적정” 인 경우

○ 기타

- 신청서 허위기재 및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, 차년도 지원사업에서 제한됨
- 학회회 참가 시 지원금 또는 자기부담금에 발생하는 관세, 부가가치세 등은 참가기업 부담임
- 선정기업 내부사정으로 인해 사업을 취소하는 경우 차년도 지원사업에서 제한됨
- 사업참여 후 지원 제외 사항 발견 시 지원금 지급을 취소함.